

## < 해외직구 관련 주요 민원 QnA >

### 1 따로 구매했는데 한국에 같은 날 도착하면 세금내나요?

- 과세물품을 면세금액으로 반복, 분할하여 반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합산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다른 날 구매하였더라도 같은 날에 반입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과세됩니다.

### 2 해외직구 시 개인 면세통관기준은?

- 물품가격 미화 150불(미국발 200불)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건강기능식품 6병, 주류 1병(1L 이하), 담배 200개비, 분유 5kg 등 면세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.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

### 3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-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.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▶ 식약처 식품안전나라([www.foodsafetykorea.go.kr](http://www.foodsafetykorea.go.kr)) » 위해예방 정보 » 해외직구정보

## 4

###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되나요?

- 개인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,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정식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반품 운송장(운송 확인서류), 판매자가 발행한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시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된 경우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.

## 5

###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?

- 물품가격 미화 150불(미국발 200불)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하고, 상기금액 초과물품과 의약품, 건강기능식품, 식품류, 총포류 등의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.

▶ 목록통관 배제물품 확인

관세청 홈페이지([www.customs.go.kr](http://www.customs.go.kr)) » 국민관심서비스 » 해외직구 FAQ

## 6

### 예상세액 계산방법은?

- 물품가격 미화 150불(미국발 200불)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는 관세,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며, 150불 초과물품은 수입신고 시 관세율에 따라 달라지오니 예상세액조회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▶ 관세청 홈페이지([www.customs.go.kr](http://www.customs.go.kr)) » 조회업무서비스 » 예  
상세액조회

## 7 자가사용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 재판매해도 되나요?

- 개인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,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습니다. 다만, 예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.

## 8 왜 운송장번호로 통관진행정보 조회가 안되죠?

- 특송업체에서 반입한 물품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운송장번호 (or 개인통관고유부호)로 조회가 가능하나, EMS(우체국)물품은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 번호체계가 C, E, R로 시작되는 것은 우편물번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관세청 홈페이지([www.customs.go.kr](http://www.customs.go.kr)) » 조회업무서비스 »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
- ▶ 우체국 홈페이지([www.epost.go.kr](http://www.epost.go.kr)) » EMS·국제우편 » EMS·국제우편행방조회